#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 3. 25.] [법률 제20859호, 2025. 3. 25., 일부개정]

환경부 (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 (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 (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 (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2 환경부 (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 (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 (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 7. 20.]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 2022. 4. 26.>
-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 5.「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 6.「가축전염병예방법」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 8. 「군수품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 9. 「동물보호법」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3.>
- ③「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7. 20.>
-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 3., 2010. 7. 23., 2013. 7. 16.>
  -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 ②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2. 27.]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8. 3., 2013. 7. 16.>
  -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3. 7. 16.>

**제9조** 삭제 <2017. 11. 28.>

제10조 삭제 <2017. 11. 28.>

제11조 삭제 <2017. 11. 28.>

제12조 삭제 <2015. 1. 20.>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 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개정 2020. 5. 26.>
  - 1. 폐석면
  -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문개정 2015. 7. 20.]

-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 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 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5. 7. 20.>]

-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 · 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대상지역 현황
  -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평가
  - 3. 환경위해성의 예방·제거 방안
  -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 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 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 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0.]

-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

-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폐기물처리 신고자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6.>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형법」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 2025. 3.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

-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 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 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 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 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 ・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 · 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1. 26, 2023. 8. 16.>

[본조신설 2013. 7. 16.]

-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2023. 8. 16.>
  -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 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 8. 3., 2013. 7. 16.>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7. 8.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⑦ 삭제<2023. 8. 16.>
-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⑨「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
-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1. 26.>
-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 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 20.]

-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9. 12, 3.>
  - ② 삭제 < 2015. 7. 20.>
  -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 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 ⑥ 삭제<2007. 8. 3.>
-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23.>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 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0조** 삭제 <2007. 8. 3.>

제21조 삭제 <2007. 8. 3.>

제22조 삭제 <2007. 8. 3.>

제23조 삭제 <2007. 8. 3.>

**제24조** 삭제 <2015. 7. 20.>

제24조의2 삭제 <2017. 4. 18.>

제24조의3 삭제 <2017. 4. 18.>

제3장 삭제 <2007. 8. 3.>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 ·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환경정책기본 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7. 8. 3., 2010. 7. 23.>
-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7. 23., 2015. 7. 20.>
-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영업
-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 분하는 영업
-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22. 12. 27.>
-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 4.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 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 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5. 7. 20.>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 ④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8. 3., 2017. 4. 18.>
-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⑤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 (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7. 4. 18.> ⑥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7. 8. 3., 2017. 4. 18.>
- ⑪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
  - ⑤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
  -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
  - 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4. 18.>
  -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 4. 18.>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조신설 2015. 1. 20.]

-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 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 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 · 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 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 업자
-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형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 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 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 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 20.]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 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10. 7. 23.]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1. 26.>
  -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 4. 28., 2012. 6. 1.>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삭제<2019. 11. 26.>
-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 · 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한국환경공단
  - 2. 국 공립연구기관
  -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 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 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 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 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조신설 2019. 11. 26.]

-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수 있다.<신설 2015. 1. 20.>
  - ⑦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5. 1. 20.>
  - ⑧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 ⑨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⑩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하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7. 23, 2017. 1. 17, 2024. 1. 30.>
  -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2.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3.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 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2. 6. 1., 2024. 1. 30.>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③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5. 17., 2010. 7. 23., 2012. 6. 1., 2017. 1. 17., 2024. 1. 30.>

- 1.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 2. 「물환경보전법」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 3. 삭제 < 2009. 6. 9.>
- ④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행정기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행정절차법」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개정 2024. 1. 30.> [제목개정 2010. 7. 23.]
-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
  - 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9. 11. 26.>
  -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 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2019. 11. 26.>
  -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2019. 11. 26.>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2020. 5. 26.>
-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1. 26.>

###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 제34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 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 3. 삭제 < 2017. 4. 18.>
  - 4. 폐기물처리업자
  -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 6. 폐기물처리 신고자
  -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 ② 삭제<2007. 8. 3.>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19. 11. 26.>
-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 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 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 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3의2. 삭제 < 2017. 4. 18.>
  - 4. 폐기물처리업자
  - 5. 폐기물처리 신고자
  -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15. 1. 20.>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 제39조(보고·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 1. 사업자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7. 23.>
-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0. 7. 23.]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 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 3. 삭제 < 2007. 8. 3.>
  -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9. 11. 26.>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 3. 삭제 < 2007. 8. 3.>
- ⑤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 ⑥ 삭제 < 2007. 8. 3.>
- ⑦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 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 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 우
- 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 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한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
- ②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 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 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9. 11. 26.>
-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7. 11. 28.>
  -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제처

-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 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선급금보증 업무 [전문개정 2013. 7. 16.]
- **제43조(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7. 23., 2012. 6. 1.>

제44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 )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 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8. 3.>
  -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3., 2010. 7. 23.>
  - 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 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 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
  -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신설 2007. 8. 3., 2010. 7. 23.>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⑦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
-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7. 8. 3.,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 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 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목개정 2010. 7. 23.]

-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용기・제품 등이「대기환경보전법」제2조,「물환경보전법」제2조 및「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용기・제품 등이「대기환경보전법」제2조,「물환경보전법」제2조 및「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2024. 2. 6.>

-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8. 7.] 제47조

-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 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 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 · 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 · 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법제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9. 11. 26.]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 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 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 · 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 · 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25.>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항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
    - 나. 제17조제8항 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다.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명령대상자
  - 나. 제17조제8항ㆍ제9항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3. 제1항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자기 소유의 토지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대상자 간 책임 정도, 조치명 령대상자의 조치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다음 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3. 25.>
  -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3.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5, 3, 2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2025. 3. 25.>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9. 11. 26.]

[시행일: 2026. 3. 26.] 제48조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0. 7. 23.]

-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25.>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시행일: 2026. 3. 26.] 제48조의3

-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 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 2.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3. 25.>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 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 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6.>
-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 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 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 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 ⑤ 대집행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 징수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5. 3. 25.>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이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받은 자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 노력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제거등 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청구비용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6., 2025. 3. 25.>

[시행일: 2026. 3. 26.] 제49조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 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2017. 4. 18.>
  -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 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 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법제처 34 국가법령정보센터

⑧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출소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 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 2.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 3.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2020. 5. 26.>
  -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 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 20.>
  -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 (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30, 2015. 1. 20, 2017. 4. 18.>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설비의 설치 및 행위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30., 2015. 1. 20., 2017. 4. 18., 2025. 3. 25.>
  - 1. 페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페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6.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 9.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3. 25.>

[시행일: 2026. 3. 26.] 제54조

-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 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7. 16.>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7. 16.>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 · 연구 · 기술개발 · 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 7. 16.>
  -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 연구
  -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 연수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협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6.>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7. 16.>

[본조신설 2007. 8. 3.]

-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4. 18., 2022. 12. 27.>
  -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 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제목개정 2015. 7. 20.]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 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0. 7. 23.]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 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5. 7. 20.]

### 제7장 벌칙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 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
  -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 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 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 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 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 12. 삭제 < 2017. 4. 18.>
- 13. 삭제 < 2017. 4. 18.>
-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 리시설을 사용한 자
-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 정을 받은 자
-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 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2024. 9. 20.>
  -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 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 3. 삭제 < 2007. 8. 3.>
  - 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 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입력한 자
  - 5. 삭제 < 2015. 1. 20.>
  -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 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 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 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 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삭제 < 2010. 7. 23.>
- 16. 삭제 < 2010. 7. 23.>
- 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2023. 8. 16.>
  - 1. 삭제 < 2019. 11. 26.>
  - 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 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 2015. 1. 20.>
  - 3. 삭제 < 2019. 11. 26.>
  -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 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 2010. 7. 23.>
  -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 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삭제 < 2019. 11. 26.>
  -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삭제 < 2023. 8. 16.>
- 3. 삭제 < 2015. 7. 20.>
- 4. 삭제 < 2010. 7. 23.>
-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 한 자
-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 8. 삭제 < 2007. 8. 3.>
-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 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0. 삭제 < 2019. 11. 26.>
- 11. 삭제 < 2019. 11. 26.>
-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 6. 1., 2013. 7. 16.>
- ⑤ 삭제<2010. 7. 23.>
- ⑥ 삭제<2010. 7. 23.>
- ⑦ 삭제 < 2010. 7. 23.>

## **부칙** <제20859호,2025. 3. 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대집행 비용의 징수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집행 계고 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